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/전화(02)3707-9431~2 /전송(02)3707-9449

처리부서 : 문화재과 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1층) 담당 양용태

문서번호 문재 86700-114

시행일자 1998. 2.

(경유)

수신 공보담당관

참조



취급			서울특별시
보존			
문화재과장	전결	[Handwritten Signature]	
문화재관리계장	[Handwritten Signature]		
기안	양용태	협조	

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서울특별시 문화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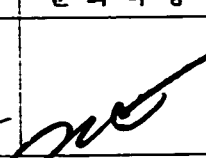
첨부 : 서울특별시 문화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(안) 1부. 끝.

원본대조필

## 문화재과장

# 서울특별시

## 문화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

문화재관리계장	문화재과장	문화국장
		

문화재 2계장<sup>부</sup> 법무담당관<sup>부</sup> 사필



## 문 화 재 과

##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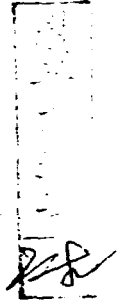
문화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통문화의 발굴·보존·전승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문화명소를 조성코자 조례를 제정함.

문화재 시설대상

명 칭	위 치
운 현 궁	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14-10
경 회 궁	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번지일원
남산골 한옥마을	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84의 1일원
서대문형무소역사관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 3동 산 5-58
몽 춘 토 성	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

위탁운영

- 문화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통문화예술을 발굴 시연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 위탁운영함.
-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선정은 문화재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



조례제정절차

제정(안)방침 결정 → 검토(법무담당관) → 입법예고(시민의견수렴 - 20일이상) → 확정(안)방침 결정(시장) →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→ 시의회상정의결 → 공포(서울특별시장)

□ 조례제정요약

0 조 례 명 -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

0 제1조(목적) - 문화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통문화의  
발굴·보존·전승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문화  
명소를 조성

0 제2조(적용범위) - 운현궁, 경희궁, 남산골 한옥마을, 서대문  
형무소역사관, 몽촌토성  
※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
0 제3조(관람료) - 문화재시설 이용자에 관람료 징수

구 분	요 금	
	개 인	단체(30인이상)
어 른 (25세이상 - 64세이하)	1,000원	800원
청소년 및 군인(13세이상 - 24세이하) ※ 재복입은 하사이하 군인	500원	400원
어 린 이 (7세이상~12세이하) ※ 초등학교 학생 포함	300원	200원
무 료 (6세이하, 65세이상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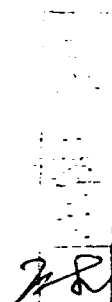
0 제4조(관람료 면제) - 국민,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
- 6세이하의 어린이, 65세이상의 노인  
- 장애인, 공무수행출입자등

0 제5조(시설사용료) - 촬영료, 한옥사용료, 마당사용료등 문화재  
시설 이용자에 사용료 징수

요금		기본요금	초과요금
구분	◦ 극영화,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	2시간이내 200,000	1시간당 50,000
	◦ 문화영화드라마이외의 TV, VTR 촬영	2시간이내 100,000	1시간당 30,000
	◦ 광고선전등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	1시간 및 모델 1명이내 20,000	1시간당 10,000
	◦ 한옥 (2시간이내, 1가옥당)	300,000	1시간당 150,000
◦ 마당	주간	400,000	
	야간	700,000	

0 제6조(운영위원회) -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시설 운영에  
관한 사항 심의

- . 위원장 포함 15인 이상 25인이내
- . 위원의 임기는 2년, 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
- . 문화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중 문화재별 7인이내의 별도 운영위원회를 들 수 있음.



0 제7조(위원회의 회의) -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개의, 출석위원  
과반수 찬성의결

0 제8조(수당등) - 회의 참석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여비, 수당등  
실비 지급

0 제9조(위탁운영) - 문화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자  
에게 위탁함.

. 문화재 보호·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
또는 단체

. 전통문화예술의 발굴·보존을 목적으로  
하는 법인 또는 단체

. 기타 문화재시설 운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 
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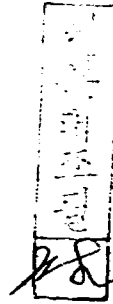
-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
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.

0 제10조(과태료 이의신청등) - 관람료 또는 사용료 징수를 면탈한  
자는 3배의 과태료 부과

0 제11조(손해배상등) - 문화재시설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 
시설물들을 파손 또는 훼손시 지체없이  
배상 또는 변상

※ 손해배상 또는 보상액은 실비임.

0 제12조(시행규칙) -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
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


**입법예고**

근거 :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5조, 제16조

예고방법 : 시보에 게재

예고기간 : 20일 이상

시민의견수렴

0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에 관하여 누구든지 의견 제출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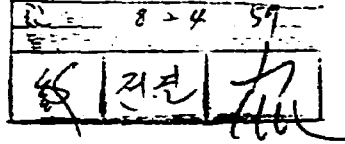
0 제출된 의견은 내용별로 정리. 분석하여 조례(안)에 반영

※ 별첨 : 1. 입법예고안 1부



# 공 고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 호



##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1998. 2.

서울특별시장

### 1. 제정 취지

문화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통문화의 발굴·보존·전승과 관람객이 즐겨찾는 문화 명소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적용대상 문화재 시설

- (1) 운현궁
- (2) 남산한옥마을

나. 문화재시설 관람료

구 분	요 금	
	개 인	단체(30인이상)
어 른 (25세이상 - 64세이하)	1,000원	800원
청소년 및 군인(13세이상 - 24세이하) ※ 재복입은 하사이하 군인	500원	400원
어 린 이 (7세이상~12세이하) ※ 초등학교 학생 포함	300원	200원
무 료 (6세이하, 65세이상)		



다. 문화재시설 사용료

요금		기본요금	초과요금
구분	○ 극영화,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	2시간이내 200,000	1시간당 50,000
	○ 문화영화드라마이외의 TV, VTR 촬영	2시간이내 100,000	1시간당 30,000
○ 광고선전등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	1시간 및 모델 1명이내		1시간당 10,000
	20,000		
○ 한 옥 (2시간이내, 1가옥당)		300,000	1시간당 150,000
○ 마 당	주 간	400,000	
	야 간	700,000	

라. 운영위원회 구성

- (1) 위원장 포함 15-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(2) 문화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중 문화재별 7인이내의 별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.
- (3) 임기는 2년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
- (4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마. 위탁운영

- (1) 문화재 보호·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(2) 전통문화예술의 발굴·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(3) 기타 문화재시설 운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
바. 예산의 보조

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.

사. 손해배상

- 1) 시설물등 파손·훼손시 배상 또는 변상
- 2) 배상 또는 변상은 시장가격인 실비

3. 의견 제출

이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2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(참조 : 문화재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, 우편번호 100-744, 전화번호 3707-9431~3, FAX : 3707-944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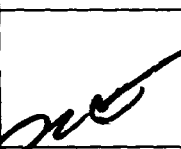
다. 기타 참고사항등



# 서울특별시

## 문화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



문화재관리계장	문화재과장	문화국장
		

문화재 2계장<sup>장</sup> 법무담당관<sup>장</sup> 사필

## 문 화 재 과

□ 조례제정요약

0 조 례 명 -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

0 제1조(목적) - 문화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통문화의  
발굴·보존·전승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문화  
명소를 조성

0 제2조(적용범위) - 운현궁, 경희궁, 남산골 한옥마을, 서대문  
형무소역사관, 몽촌토성  
※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
0 제3조(관람료) - 문화재시설 이용자에 관람료 징수

구 분	요 금	
	개 인	단체(30인이상)
어 른 (25세이상 - 64세이하)	700원	550원
청소년 및 군인(13세이상 - 24세이하) ※ 재복입은 하사이하 군인	300원	250원
어 린 이 (7세이상~12세이하) ※ 초등학교 학생 포함	200원	150원
무 료 (6세이하, 65세이상)		

0 제4조(관람료 면제) - 국민,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
- 6세이하의 어린이, 65세이상의 노인  
- 장애인, 공무수행출입자등

0 제5조(시설사용료) - 촬영료, 한옥사용료, 마당사용료등 문화재 시설 이용자에 사용료 징수

요금		기본요금	초과요금
구분	○ 극영화,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	2시간이내 200,000원	1시간당 50,000원
	○ 문화영화드라마이외의 TV, VTR 촬영	2시간이내 100,000원	1시간당 30,000원
	○ 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	1시간 및 모델 1명이내 20,000원	1시간당 10,000원 모델 1명당 10,000원
	○ 한옥 (2시간이내,1가옥당)	300,000원	1시간당 150,000원
○ 마당	주간	400,000원	
	야간	700,000원	

0 제6조(운영위원회) -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

- . 위원장 포함 15인이상 25인이내
- . 위원의 임기는 2년, 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
- . 문화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중 문화재별 7인이내의 별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.

0 제7조(위원회의 회의) -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

- 0 제8조(수당등) - 회의 참석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여비, 수당등  
실비 지급
- 0 제9조(위탁운영) - 문화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자  
에게 위탁함.
- . 문화재 보호·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
또는 단체
  - . 전통문화예술의 발굴·보존을 목적으로  
하는 법인 또는 단체
  - . 기타 문화재시설 운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 
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
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.
- 0 제10조(과태료 이의신청등) - 관람료 또는 사용료 징수를 면탈한  
자는 3배의 과태료 부과
- 0 제11조(손해배상등) - 문화재시설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 
시설물들을 파손 또는 훼손시 지체없이  
배상 또는 변상
- ※ 손해배상 또는 보상액은 실비임.
- 0 제12조(시행규칙) -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
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
## 입법예고

근거 :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5조, 제16조

예고방법 : 시보에 게재

예고기간 : 20일 이상

시민의견수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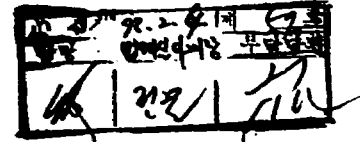
0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에 관하여 누구든지 의견 제출가능

0 제출된 의견은 내용별로 정리. 분석하여 조례(안)에 반영

※ 별첨 : 1. 입법예고안 1부



# 공 고(안)

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8-12호

##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1998. 2.

서울특별시장

### 1. 제정 취지

문화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통문화의 발굴·보존·전승과 관람객이 즐겨찾는 문화 명소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적용대상 문화재 시설

- (1) 운현궁
- (2) 남산한옥마을

나. 문화재시설 관람료

구 분	요 금	
	개 인	단체(30인이상)
어 른 (25세이상 - 34세이하)	700원	550원
청소년 및 군인(13세이상 - 24세이하) ※ 재복입은 하사이하 군인	300원	250원
어 린 이 (7세이상~12세이하) ※ 초등학교 학생 포함	200원	150원
무 료 (6세이하, 65세이상) <i>장애인 무료</i>		



다. 문화제시설 사용료

요금		기본요금	초과요금
구분	○ 극영화,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	2시간이내 200,000원	1시간당 50,000원
	○ 문화영화드라마이외의 TV, VTR 촬영	2시간이내 100,000원	1시간당 30,000원
	○ 광고선전등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	1시간 및 모델 1명이내 20,000원	1시간당 10,000원 모델 1명당 10,000원
	○ 한옥 (2시간이내, 1가옥당)	300,000원	1시간당 150,000원
○ 마 당	주 간	400,000원	
	야 간	700,000원	

라. 운영위원회 구성

- (1) 위원장 포함 15~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(2) 문화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중 문화제별 7인이내의 별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.
- (3) 임기는 2년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
- (4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마. 위탁운영

- (1) 문화제 보호·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(2) 전통문화예술의 발굴·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(3) 기타 문화제시설 운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
**바. 예산의 보조**

·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.

**사. 손해배상**

- 1) 시설물등 파손·훼손시 배상 또는 변상
- 2) 배상 또는 변상은 시장가격인 실비

**3. 의견 제출**

이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2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(참조 : 문화재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, 우편번호 100-744, 전화번호 3707-9431~3, FAX : 3707-944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등